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124166      |
| 의 퇴 인 | 최연숙 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3. 9. 19. |
| 추계번호  | 23C3726      |

#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하는 등의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과 2028년에 각각 1억 8천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억 6천만원(연평균 7,2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-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합계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치료보호기관 평가·재지정<br>(안 제40조제4항) | 180  | -    | -    | 180  | -    | 360 | 72  |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제4항 |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 지사는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마약류중독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2  | 안 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제7항 |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보호기관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·운영하여야 하며,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| 의무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| 추계<br>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제4항 | ○        | ○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제7항 | ×        | 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하고, 치료보호기관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개발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안 제40조제7항은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안 제40조제11항은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전문교육의 횟수 및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
- 다만, 안 제40조제4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3년 주기 재평가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보건복지부는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되 3년 주기로 평가하여 재지정하고 있으므로, 동 사례를 적용하여 치료보호기관의 3년 주기 재평가 비용을 추계
  -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사업에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
  -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사업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치료보호기관 수가 재활의료기관 수보다 적으므로 추계기간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재지정 평가 예산은 3년 주기로 편성된다고 가정
    - 2023년 기준 재활의료기관 수는 53개소<sup>1)</sup>로 치료보호기관의 수(24개소)보다 많으나, 3년 평가주기에 따라 매년 평가하는 재활의료기관 수는 2022년 26개소 등으로 치료보호기관 수와 유사
    - 향후 매년 추가로 지정 또는 지정 해제되는 치료보호기관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 - 추계기간 비용 단가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
- 추계결과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과 2028년에 각각 1억 8천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

[표 2] 치료보호기관 평가·재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합계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치료보호기관 평가·재지정<br>(안 제40조제4항) | 180  | -    | -    | 180  | -    | 360 | 72  |

1)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‘특수운영기관 정보’ 자료를 참고

## IV. 부대의견

-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김우림 | 이진우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|
| 김우림 | 02-6788-3738 | wrkim@assembly.go.kr |